

대구지방법원 2023. 3. 10 선고 2022가단136512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4. 4. 3 선고 2023나307107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3. 3. 10 선고 2022가단136512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23. 2. 24.

판결선고 2023. 3. 10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8. 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 사실

1) 피고의 아들 C은 2020. 7. 13. 원고에게 “2020고단1234 사기건에 대한 피의자 C은 2억원 중 3천만원을 2020. 7. 14.에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출소 후 매월 일천오백만원씩을 2020. 12. 31.까지 명시하고 상환할 것을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.”라는 내용의 각서(이하 ‘이 사건 각서’라 한다)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, 피고는 이 사건 각서 하단의 “보증인”이라는 글자 아래에 피고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다.

2) C은 2020. 7. 14. 원고에게 3,000만 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(이 사건 각서,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,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), 을 제1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남은 약정금 1억 7,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약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보 송달 다음 날인 2022. 8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, 이 사건 각서가 C의 형사재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

주장한다.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서(을 제1호증 중 일부, 이하 ‘별개 각서’라 한다)와 이 사건 각서는 필체가 다소 다르지만 그 내용과 작성일자가 모두 동일하고, C 이름 옆의 무인이 모두 C의 무인이므로, 이 사건 각서와 별개 각서 모두 C의 형사합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 별개 각서는 C의 형사사건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되었고,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확인을 받아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. 별개 각서만 형사사건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명환